

3. 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中改正令

總理令 第628號 1997. 4. 14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1월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2조 제1항).
- 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8항).
- 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 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함(영 제26조제3항).
- 라. 같은 날에 가입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통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

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종종료일까지 1세대1통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에 대하여서는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40조의 5).

-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 및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 4 및 별표 6).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